

4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단계

8. 투자완료 확인요청

홈페이지를 통해 실거래 증빙내역 기입 및 투자완료 확인서류 첨부하여 온라인에 확인요청

투자완료 확인 서류

구분	위험기계교체			위험 공정 개선
	이동식 기계	리프트	노후 위험 기계	
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○	○	○	○
산재완납증명원 1부(발행 후 15일 이내)	○	○	○	○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발행 후 15일 이내)	○	○	○	○
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	○	○	○	○
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	○	○	○	○
지급보증보험증권	○	○	○	○
안전인증서(해당 시)	○	○	○	○
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(사본)	○			
자동차등록말소증 및 관련서류	○			
설비(기계장치) 폐기 또는 수출사진	○		○	
원가계산(검토)보고서			○	○
보조금 입금요청 통장사본(직접보조방식의 경우)	○	○	○	○

9. 투자완료 확인평가

홈페이지에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공단 일선 기관에 사업완료 적정여부 평가

- **[서류확인]** 홈페이지에 입력·첨부한 투자완료 확인 서류 적정성 확인
- **[현장확인]** 해당 투자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체·개선 확인

10. 투자완료 승인

투자완료 확인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투자완료가 적정할 경우 승인

11. 보조금 지급

투자완료 승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

〈보조금 지급 방법〉

- 투자완료 확인결과에 따라 ▲금융방식의 경우 확정된 보조금을 해당 금융사에 지급, ▲직접보조방식의 경우 최종 정산 금액*의 50%에서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 계좌로 지급
- * 결정통보금액, 실거래금액, 표준단가금액 또는 원가검토금액 중 낮은 금액을 최종 정산금액으로 판단

12. 사후관리

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자완료 다음년도 부터 3년(이동식 기계) 또는 5년(리프트·노후기계·위험공정) 사후관리 실시
※ 사업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

2023-중소기업지원실-61



안전을위한
우리를We한

안전투자
혁신사업

안전투자
혁신사업

○+ □□+□+○+ □□+□+○+ □□+
□□+○+ □□□□+○+○□□ +○+○□□

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 anto.kosha.or.kr



대표번호 1644-4555



고용노동부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I. 사업 개요

1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이란?

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·기구를 교체 또는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

'23년도 사업예산

구분	계	위험기계·기구 교체	위험공정 개선
예산	3,198.8억원	969.8억원	2,229억원

2 사업신청 및 지원내용

| 신청기간 | '23. 1. 18.(수) 09:00 ~ 3. 15.(수) 18:00

| 지원대상 |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 [별표3]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
위험기계 교체

구분	① 이동식크레인	② 고소작업대	③ 리프트	④ 노후위험기계 6종
지원 대상	안전인증제도 이전 ('09.09.30.까지) 출고된 이동식크레인 소유사업주 <'20.12.31.까지 소유 한정>	안전인증제도 이전 ('09.06.30.까지) 출고된 고소작업대 소유사업주 <'20.12.31.까지 소유 한정>	산업용리프트 도입 전 ('20.07.16.까지)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소유사업주 (건설용 리프트 지원불가) * 권동식·원치식·유압식	30년 노후 위험기계·기구 6종 소유사업주 <'92.12.31.까지 생산된 기계>
지원 종류	카고형	차량탑재형	유압식	프레스, 사출성형기, 크레인 (타워 및 이동식 제외) 전단기, 컨베이어, 롤러기
조건	기존 설비 폐기			
지원 범위	소요비용의 50%, 최대 7천만원			
보조금 지급 방식	직접보조방식 or 금융보조방식(리스·할부)			

※ (교차지원) 고소작업용으로 사용(탑승설비 부착)하는 이동식크레인일 경우, 차량 총중량 기준 7.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신규 교체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

위험공정 개선

구분	① 뿌리공정	② 고위험 3대 업종
대상	뿌리기술* 활용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** 사업주 *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 **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, 제조업(2****)	고위험 3대 업종*에 해당하고,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*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(218**),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**),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(229**)
조건	기존 제조 공정개선	
지원범위	소요비용의 50%, 최대 1억원	
보조금 지급방식	직접보조방식* or 금융보조방식(리스·할부) * 자부담 금액에 대해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가능	

3 사업 신청 시 준수사항

☑ 부정수급 금지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 결정이 취소되며, 지급된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(최대 5배) 부과·징수 ※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사업 참여제한 조치 적용

☑ 기타 준수사항

- [산재보험 유지]**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산재보험을 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후관리 종료일 이후까지 완납 상태로 유지 ※ 해당 기간 내 산재보험 소멸 시 보조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될 수 있음
- [지원조건 준수]** 사업 신청 전 사업공고문 상의 사업별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급기준 등의 사업 지원조건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 ※ (예시) 고소작업대 교차지원 시 차량총중량 7.5톤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☑ 참여제한 사업장

▲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▲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▲휴·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, ▲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, ▲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, ▲'23년도에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사업장

II. 사업 절차

☑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인(anto.kosha.or.kr)으로 진행

1 사업신청

온라인 신청 (홈페이지)

https://anto.kosha.or.kr

투자기업

2 서류 검토

신청자격 검토

신청대상, 서류 누락사항 등

공단 일선기관

3 우선지원 대상선정 (예비선정)

우선지원 기준 적용

규모, 노후도, 보유기간 등

공단 본부

4 대상선정평가

현장평가

이동식기계는

위탁검사장 방문

금융사

6 승인심사 및 결정통보

[승인심사]

지원대상자 결정

[결정통보]

설비 도입 시작

공단 본부

7 설비 투자

[설비투자] 사업 착수

[착수금 신청]

보조금의 70%

* 직접보조의 경우 해당

투자 기업

8 투자완료 확인 요청

투자완료 기한 내

완료여부 확인 요청

결정통보일로부터

최대 6개월(4+2)

투자기업 → 공단

9 투자완료 확인 평가

투자완료 여부 확인

직접 방문 확인

공단 일선기관 → 투자기업

10 투자완료 승인

투자완료

확인 승인

공단 본부

11 보조금 지급

[직접보조방식] 공단→투자기업

[금융보조방식(리스·할부)]

공단→ 금융사 (→ 투자기업)

공단 본부 → 투자기업 (or 금융사)

12 사후관리

투자완료 확인

다음연도부터 3~5년

이동식기계 3년, 그 외 5년

공단 → 투자기업

1 사업 신청 단계

1. 사업 신청

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 「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https://anto.kosha.or.kr)」를 통해 신청

구 분	위험기계교체			위험 공정 개선
	이동식 기계	리프트	노후 위험 기계	
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○	○	○	○
산재완납증명원 1부(발행 후 15일 이내)	○	○	○	○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발행 후 15일 이내)	○	○	○	○
소기업 확인서 1부(유효기간 내,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)	○	○	○	○
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○	○	○	○
②견적서 1부	③ ○	○	○	○
④신청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		○	○	○
사업계획서(기존 설비·공정 사진 등 포함) 1부		○	⑤ ○	○
⑥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1부	○	-	-	-
안전검사 관련 서류 1부(안전검사 필증 또는 결과서)	○	-	-	-
장비사진(전, 후, 옆면, 명판 등 포함)	○	-	-	-

- ① 동의서 양식은 「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」 자료실 참조
 ② 공급업체 날인된 견적서(응선사항 기재 필요) 제출, 제작·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
 ③ 고소작업용(탑승설비 부착)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대로 교차 신청할 경우, 도입차량의 총중량 기준 7.5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
 ④ 양산품의 경우 규격, 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첨부, 제작 또는 공사품의 경우 도면 첨부
 ⑤ 노후위험기계교체 사업계획서 작성 시, 기존 설비의 기계명판, 모터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⑥ (7계장치 명판 훼손 시) 제조사 제작증명확인서 추가 제출 (지입차량의 경우) 차량등록원부 상 현물출자 위·수탁 차량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위·수탁계약서 추가 제출

2 지원자격 검토단계

2. 서류 검토

신청 접수된 사업장의 서류 적정성 및 진위여부 확인

3. 우선지원 대상선정(예비선정)

우선선정 기준을 토대로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

지원 사업별 우선선정기준			
구분	우선선정기준 항목		
위험기계 교체	이동식기계	▶ 위험기계 제조연월 및 보유기간	
	리프트·노후기계	▶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, 노후도 및 사망사고 위험도	
위험공정 개선		▶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, 사업장 노후도, 공정개선 중심 및 가점	

4. 대상선정평가

예비선정 된 투자기업은 ▲재정평가, ▲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

- [재정평가]** 금융보조방식(리스·할부)을 선택한 투자기업은 홈페이지에서 금융사 중 1개소를 선택 후 재정 평가 신청
- [현장평가]** 신청자의 기존 설비 또는 공정 보유여부 및 신청 설치 소재지 확인

5. 협약 체결

사업 참여 주체별 협약체결을 통해 원활한 사업완수를 위한 참여 기관별 명확한 의무 부여 등

체결 대상

직접보조 선택 시(3자간) : 공급업체 ↔ 투자기업 ↔ 공단

금융방식 선택 시(4자간) : 공급업체 ↔ 투자기업 ↔ 금융사 ↔ 공단

3 결정 심사 및 사업 착수단계

6. 결정심사 및 결정통보

- [결정심사]** 대상선정평가(④) 적합 및 협약체결(⑤)이 완료된 투자기업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결정 대상자 및 지급가능 금액 결정
- [결정통보]** 홈페이지에서 보조결정통보서 확인 후 사업 진행

7. 설비투자

- [사업착수]** 투자기업은 사업기간 4개월 (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) 이내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비제작, 장비도입, 기계 교체 등 투자를 진행
- [사업변경]** 설비 설치장소*, 도입설비, 설비금액, 공급업체 또는 보조금 지급방식 등 변경**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이 필요
 - *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따른 설비 설치장소 변경에 한하여 가능
 - **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선정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

- [착수금 신청]** 설비제작·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 요청 전까지 착수금(보조결정 금액의 70%) 신청 가능
 - ※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방식으로 선택한 사업장에 해당